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8호로 채택

주체112(2023)년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92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제 1 조 (전자인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은 전자인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료 통신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자인증이란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 전자거래란 전자자료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자자료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로 작성, 처리, 전송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가입자란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자료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전자자료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검증할수 있도록 해당 전자자료에 첨부된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 전자인증열쇠란 신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만드는데 리용하는 정보 또는 장치를 말한다.
- 전자증명서란 가입자의 신분이나 자격 같은것을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 전자인증기관이란 전자인증봉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조 (전자인증체계의 수립원칙)

전자인증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자료통신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가적 인 전자인증체 계를 통일적 으로 세우고 합리 적으로 관리운영 하도록 한다.

제4조 (전자인증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 를 적극 받아들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조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

전자인증사업 에 대 한 통일적 인 지도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 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며 전자인증 사업을 표 준 화, 규격화하고 전자인증체계의 부문구조와 전자인증기능을 더욱 완비해 나가야 한다.

제 6 조 (전자인증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전자인증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는 중앙전자인증지 도기 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인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자인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8조 (법의 적용)

이 법은 자료통신망, 전자거래체계를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리용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 공민에 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제 9 조 (전자인증대상)

자료통신망이 나 전자거 래체 계에서 전자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의 신분, 자격
2.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
3. 전자자료의 서명자와 자료내용의 정확성

4. 기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 대상

제 10조 (전자인증등급의 구분)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눈다. 전자인증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 11조 (전자인증등급의 제정기관)

전자인증등급은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할 부분의 전자인증대상에 대한 등급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등급을 바로 정하고 전자인증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2조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의 발급)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인증기관에 신분이나 자격,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유일 식별정보 같은것을 등록하고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 발급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 13조 (전자인증열쇠의 관리)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를 정해진 질서대로 안전하게 보관리용하며 그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를 분실, 도용당하였거나 도용당할 가능성이 조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4조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폐기)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전자인증기관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및 폐기를 요구할수 있다.

퇴직 또는 조동 같은 리유로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때에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조 (가입자신분 및 컴퓨터실체의 인증방법)

가입자의 신분인증,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인증은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전자 인증열쇠의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열쇠의 비밀을 로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 (전자자료의 인증방법)

전자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승인한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로 전자자료에 서명한 다음 발송 또는 보관한다.

전자자료를 접수한 가입자는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해당 전자자료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자자료의 서명자와 자료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확인한다.

전자자료의 작성, 승인, 발송, 접수, 보관시점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증기관에 제기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전자사본의 효력)

종이문서를 전자사본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전자자료는 사본자, 사본날자, 원본과의 동일성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전자거래의 증빙문서로 리용할수 있다.

제 18조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수표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서명에 리용되는 전자인증열쇠가 서명당시 서명자의 유일한 소유로서 서명자에 의해서만 리용되고있어야 한다.
2. 전자자료에 서명한 후 그 전자서명과 전자자료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제 19조 (전자자료의 법적효력)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자료는 법적효력을 가진다.

1. 전자자료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열람, 검색할수 있어야 한다.
2. 전자자료내용이 정확히 보존되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3. 전자자료의 작성자와 송수신자, 시간, 장소 같은것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제 20 조 (전자자료의 송수신자)

전자자료의 발송을 승인한자, 전자자료가 자동발송되는 정보 체계를 관리하는자, 거래당사자들의 사전합의에 따라 발송자로 확인된자는 송신자로 된다.

송신자로부터 전자자료를 받도록 지정된자는 수신자로 된다.

전자자료의 전송을 중개하는자는 송신자나 수신자로 되지 않는다.

제 21 조 (전자자료의 송수신시간)

전자자료의 송신시간은 전자자료가 송신자가 조종하는 정보체계를 벗어난 시간이다.

전자자료의 수신시간은 수신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그 전자자료를 열람할수 있게 된 시간이다. 그러나 수신자가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신시간은 수신자가 전자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시간이다.

거래당사자들이 전자자료의 송신시간, 수신시간에 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2 조 (전자자료의 송수신장소)

송신자의 기본소재지를 전자자료의 발송지점으로 하고 수신자의 기본소재지를 전자자료의 접수지점으로 한다.

거래당사자들이 전자자료의 발송지점, 접수지점에 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3 조 (다른 나라 전자자료, 전자서명의 신뢰성에 대한 인정)

다른 나라 전자자료와 전자서명의 신뢰성에 대한 인정은 공인된 국제적기준, 우리 나라가 가입한 조약 등에 근거하여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한다.

제 24 조 (전자인증수단의 리용승인, 규격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자인증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장치수단을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거나 보급, 리용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과 관련한 규격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 25 조 (자료통신망, 전자거래체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을 비롯한 보안대책을 세운 다음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전자인증봉사료금)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 3 장 전자인증기관

제 27 조 (전자인증봉사신청)

전자인증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물질기술적 조건을 갖추고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전자인증봉사신청의 심의)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가를 따져보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인증봉사의 내용과 범위를 밝힌 전자인증봉사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29 조 (전자인증기관의 자격)

전자인증봉사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것과 같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다.

제 30 조 (전자인증업무준칙의 작성 및 등록)

전자인증기관은 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자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31 조 (전자인증봉사의 안전성보장)

전자인증기관은 봉사와 관련한 업무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전자인증봉사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자료통신망이나 전자거래체계의 안전성보장에 부정적영향이 미칠수있는 경우 즉시 해당 전자증명서를 폐기하는것과 같은 안전대책을 세울수 있다.

제 32 조 (전자인증봉사의 중지)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기 30일전에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전자인증봉사의 위임)

전자인증기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인증봉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의 보관관리)

전자인증기관은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정해진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는 변경, 삭제하거나 루설할수 없다.

전자인증기관에 보관된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열람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손해보상)

전자인증기관 또는 가입자의 잘못으로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제 36 조 (벌금처벌)

전자인증등급 2급이하의 전자인증대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 한다.

1. 권한없는자에게 전자인증열쇠를 리용하게 하였거나 정해진 기일안으로 전자 인증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국민에게는 5 000~1만원
2. 전자인증열쇠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도용당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20만원, 국민에게는 5 000~1만원

3. 다른 가입자의 신분으로 발급된 전자인증열쇠를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00만원, 국민에게는 1만~5만원

제 37 조 (중지 처 벌)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시킨다.

1. 승인없이 전자인증관련프로그램, 장치수단을 판매, 보급, 리용하였거나 전자인증 봉사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전자인증관련규격을 제 정 하였거 나 등록하지 않고 자료통신망이 나 전자거래체 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제 38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 벌을 준다.

1. 전자인증대상별로 전자인증등급을 바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2. 전자인증등급에 부합되는 전자인증수단을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39 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

다음의 경 우에 는 책임 있는자에게 3개 월 이 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2. 전자인증등급 3급이상의 전자인증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지적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전자인증관련프로그램이나 장치수단을 판매, 보급, 리용하였거나 승인된 전자인증관련프로그램이나 장치수단을 자의대로 변경시켜 리용하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였거나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변경, 삭제, 루설, 파괴시켰을 경우
5.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자료통신망, 전자거래체 계를 운영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 40 조 (강직, 해 임, 철직 처벌)

전자인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 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41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 책임을 지운다.

제 5 장 부 직

제 42조 (시 행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92호 [주체112(2023)년 12월 5일] 로 수정보충한 전자인증법은 주체112(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